

**투자위험등급 : 2 등급  
[ 높은 위험 ]**

유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택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인덱스 200 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인덱스 200 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인덱스 200 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http://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1.02.08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06.0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회사의 주권(1 조주)  
[모집(매출) 총액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상세목차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이 투자회사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유리 인덱스200 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 (31717)		
(종류)클래스	Class A	Class B	Class I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1849	50898	64955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조주

이 투자회사는 1조주까지 모집 가능하며, 1주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http://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유리인덱스200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	31717
종류 A	61849
종류 B	50898
종류 I	64955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1.02.09	설립
2001.02.20	금융감독원 등록
2006.11.08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Class A 추가
2007.02.06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Class I 추가
2007.08.0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2008.05.06	투자대상 변경(주식선물 추가)
2009.03.02	세제지원방안 추가
2009.05.03	펀드명칭 변경 유리인덱스200주식파생형투자회사 → 유리인덱스200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
2010.02.24	① 정관변경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금 유보내용 반영 및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교부 방법 변경 ②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과세방법 변경 반영
2010.05.03	정관변경 : 판매보수인하 (Class A 수익증권)
2010.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6.11)에 따른 투자회사 임의해산사유 변경 및 수시공시 사항 변경
2010.08.04	2010.07.28 변경 내용 중 임의해산사유 개정내용 삭제 (투자회사는 임의해산사유 미적용)

###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회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써 별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존속기간은 투자회사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이 투자회사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대표전화 : 02-2168-7900)

주1)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은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를 포함한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의 환 펀드 서비스(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위탁의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1.02.08 현재)

###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한진규	1969 (42세)	인덱스 운용 본부장	38개	6,03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2000.2~현재)</li> <li>- 한국투자신탁 투자공학팀(1995~2000) / CFA</li> <li>- KAIST금융공학 박사과정</li> <li>- KAIST대학 경영공학 학사</li> </ul>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개수(5개), 규모(2,361억원)]

주1)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인덱스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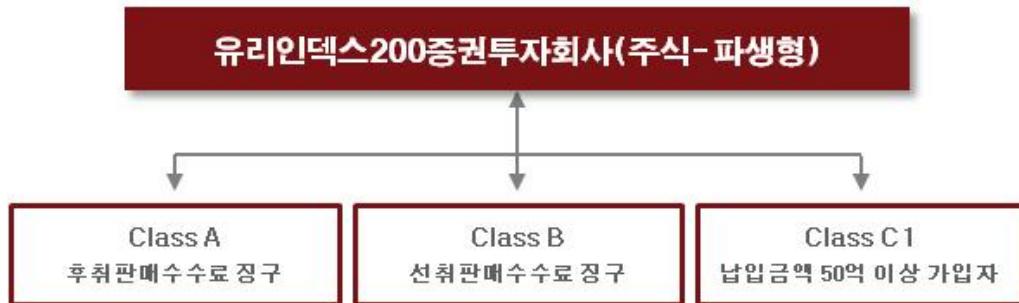
###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기간
한진규	2001.02~현재

주1) 2011년 2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 투자회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회사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펀드코드	가입자격
Class A	61849	가입 제한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부과됨.

Class B	50898	가입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됨.
Class I	64955	50 억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가입

#### <보수 및 수수료 차이>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종류 A	종류 B	종류 I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없음	납입금액의 1%	없음
	후취 판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0.5%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없음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보수	운용보수	연 0.500%	연 0.500%	연 0.500%
	판매보수	* 하단의 기간별 보수율 참조	없음	연 0.120%
	신탁보수	연 0.030%	연 0.030%	연 0.030%
	사무관리보수	연 0.025%	연 0.025%	연 0.025%
설정일		2006년11월8일	2001년2월9일	2007년2월6일

주)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Class A 기간별 보수율

적용기간	판매회사보수
2010년 05월 03일 ~ 2011년 05월 02일	연 1.300%
2011년 05월 03일 ~ 2012년 05월 02일	연 1.200%
2012년 05월 03일 ~ 2013년 05월 02일	연 1.100%
2013년 05월 03일 ~ 신탁계약의 만료일	연 1.000%

Class A의 판매보수는 각 기간에 따라 위의 보수율을 적용 받습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으로 KOSPI200 (목표주가지수)에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하되 제한적 범위 내에서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통해 자본이득 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u>60%이상</u> <u>(다만,</u> <u>국내주식</u> <u>60%이상)</u>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 중 법 제9조제13항 2호의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60% 이상
(2)	채권	100% 이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90일 이내 만기도래되는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
(4)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금리스왑 거래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수익증권 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수익증권 등”이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8)	증권 대여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총액의 50% 이하
(9)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하
(10)	증권 차입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고유재산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13)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p>(1) 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투자회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li> <li>2. 이 투자회사의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li> <li>3. 이 투자회사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li> <li>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li> <li>5.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내지 (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li> </ol>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단기대출	<p>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회사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시행령 제83조제3항에 따른 단기대출</li> <li>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li> </ul>	
(2)		<p>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p>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의 30%까지 :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어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li> <li>○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li> </ul>	
(4)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장내 파생상품 투자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8)	투자한도 초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b>가. 투자대상의 (3)~(5), 나. 투자제한의 (2)~(7)</b> 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투자목적]

- 장기 자본이득 등의 획득을 목적으로 투자회사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이 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이 투자회사의 비교지수인 한국종합주가지수 200(KOSPI200)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 200(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목적한 바대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주주에 대한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투자방침]

- 이 투자회사의 비교지수인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의 변동률에 근접한 성과의 달성을 위해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과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 다만, 추적오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OSPI200 구성 종목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전략]

- 지수추종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는 부분복제기법을 적용하여 비교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부분복제기법이란 추적오차를 감안하여 비교지수 구성종목의 일부를 추출하고 추출된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비중을 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수추종기법을 의미합니다
  -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종목별 구성비중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 초과수익 추구 전략
  -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일정 수준 비교지수와 다르게 구성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기업의 인수, 합병, 실적 모멘텀 등 이벤트를 활용한 종목별 대응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식 및 파생상품간 스왑 거래 및 파생상품간의 스왑거래를 활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스프레드 매매 및 장단기 시장흐름에 따른 비중조절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추적오차 관리 전략
  - 비교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적오차를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추적오차가 주어진 허용범위(1일 기준 ±0.5%)를 초과하는 경우 원인 분석 후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합니다.
- 현금성 자산 운용전략
  - 주식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은 원활한 환매대응과 투자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4영업일 이내의 콜거래를 통하여 운용합니다.

#### [위험관리전략]

- 운용역 개인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운용업 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투자회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여러 주식의 주가수준을 종합한 지수인 비교지수의 성과에 근접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주가 수준 하락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 시에는 이 투자회사의 가치 역시 비교지수의 하락에 그대로 노출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회사는 KOSPI200의 성과에 근접한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상황, 운용여건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비교지수인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의 수익률과 이 투자회사의 성과 간의 차이, 즉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오차는 이 투자회사

와 같이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요소가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나, 추적오차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회사는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회사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 및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종인덱스의 내역]

##### - 비교지수

· 이 투자회사의 상대적 운용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KOSPI200을 선정하여 사용합니다. KOSPI200지수는 한국거래소를 대표하는 200종목으로 구성되어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와 수익률 추이가 일반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선물·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되는 바, 이와 관련한 대표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이 투자회사의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한국종합주가지수200 (Korea Stock Price Index200, KOSPI200)에 대한 설명

- 주가지수개요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업종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표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되는 지수
- 지수산출기관 : 한국거래소
- 기준일 및 기준지수 : 1990년 1월 3일 = 100pt
- 지수산출방식 : 유동주식수만 가중한 시가총액방식
- 구성종목 변경방법
  - ✓ 정기변경 : 매년 1회 KOSPI200 선물시장의 6월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변경된 종목으로 지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변경
  - ✓ 특별변경 : 지수구성종목중에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폐업, 합병 등의 사유로 KOSPI 200 구성종목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변경
- ⇒ 지수산출방식 등 지수에 관한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인 한국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http://www.krx.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종합주가지수200 (Korea Stock Price Index200, KOSPI200)”은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서비스표입니다.

※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

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나. 수익구조

- 이 투자회사는 회사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 주식 시세의 등락 및 배당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밖에 주식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평가손익 등이 이 투자회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주식의 시세는 해당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급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은 경제·정치·자연·사회·문화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대상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할수록, 투자대상 주식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클수록 주식의 시세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투자회사의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 투자회사의 성과는 비교지수의 성과와 비교지수 대비 추적오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투자회사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추적오차’ 보다는 ‘비교지수의 성과’로부터 월등히 높은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이 투자회사는 비교지수[KOSPI200지수]의 성과와 유사한 성과의 달성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바, 비교지수의 성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매시점의 비교지수가 매입시점의 비교지수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큰 투자수익이 발생하며, 반대로 환매시점의 비교지수가 매입시점의 비교지수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 이 투자회사의 성과는 자본이득, 배당수입, 이자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주주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회사를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http://www.yurieasset.co.kr)) 등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공시 합니다.

(주1)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합니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 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과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VaR)
4. 그 밖에 주주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 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일반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회사는 회사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회사의 성과는 시세가 항상 크게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투자회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여러 주식의 추가수준을 종합한 지수인 추적대상지수의 성과에 근접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주가 수준 하락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 시에는 이 투자회사의 가치 역시 추적대상지수의 하락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과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u>100분의 10 이내</u> 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회사로서 과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금융투자상품,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위험	투자회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가 시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회사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손실을 유발합니다.
금리변동위험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이 투자회사는 회사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매비용 과다위험	이 투자회사는 운용목표의 달성을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회사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회사는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회사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회사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및 운용 관련 위험	이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거래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며 레버리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회사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추적오차위험	이 투자회사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하지만 실제운용여건과 지수산출 조건과의 차이, 시장 상황변화, 초과수익추구를 위한 포트폴리오 변경, 부분복제법 실행에 따른 추적대상지수와 실제포트폴리오의 종목 구성 차이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에 대한 추종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고 비교지수의 성과와 이 투자회사의 성과의 차이가 목표로 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위험	이 투자회사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등 특정 투자대상과 다른 투자대상 간의 가격 차이의 추세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바, 이러한 가격 차이의 추세가 예상과 달리 실현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이시스 위험	이 투자회사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바,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환매가격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회사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율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주권에 대해 심각한 환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회사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최저순자산액 미달위험	투자회사는 순자산액이 법 및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투자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3개월이 경과할때까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투자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회사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지가 발생할 경우 투자회사의 수익자는 의도한 투자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해지 과정에서 투자회사 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회사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회사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세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수익자의 지위, 투자회사재산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나 예금과 같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이나 장부가 등을 반영하여 회사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회사재산 가치의 수익자간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위험	이 투자회사의 운용자는 이 투자회사를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 하에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것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회사가 보유한 증권 등의 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 거래위험	이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 제한,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대량환매위험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를 받거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 자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회사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용 교란 위험	투자회사에 대한 설정 및 환매의 청구는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래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회사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유리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 이 투자회사는 그 시세가 항시 변동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급격한 시세변동에 노출되고 큰 규모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니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이 투자회사를 5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 이 투자회사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의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전체 보유자산 대비 합리적 비중을 초과하여 이 투자회사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이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절대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6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li> <li>· 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성과를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구조상의 원금보존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li> <li>· 외화자산 및 관련파생상품, 원자재 및 관련파생상품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li> <li>· 이상에 준하거나 이상을 초과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 (예 :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li> </ul>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에 투자 가능한 최대비율이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30% 초과~6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li> <li>· 시장 대표성을 지니거나 광범위한 분산투자를 추구하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것으로서 인덱스형 및 인핸스트 인덱스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li> </ul>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에 투자가능 한 최대비율이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30% 이하인 집합투자기구</li> <li>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성과를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구조상의 원금보존추구가 이루어지는 것</li> <li>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나 시장중립적 성과를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 및 주식 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 투자로 인한 위험평가액의 한도가 집합투자기구재산의 20% 이내인 것</li> <li>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li> </ul>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등급(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은행채 및 회사채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li> <li>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li> </ul>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MF</li> <li>국공채에만 투자할 수 있 채권형 집합투자기구</li> <li>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li> </ul>

주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각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은 해당 상품 유형의 기본적 속성을 단순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실제 위험등급의 분류는 상품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부 상품의 경우 부여된 위험등급이 해당 위험등급에 대한 상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회사의 주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판매회사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이체를 통해 이 투자회사의 주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회사의 가입 가능한 주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펀드코드	가입자격
Class A	61849	가입 제한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부과됨.
Class B	50898	가입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됨.
Class I	64955	50 억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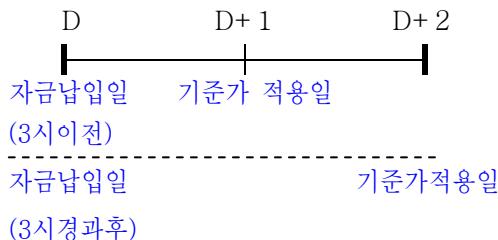
###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15시[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회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회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주권의 매입 이후에는 일체의 투자성과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이 투자회사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하시어 주권의 매입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나. 환매

### (1) 주권의 환매

투자자는 언제든지 주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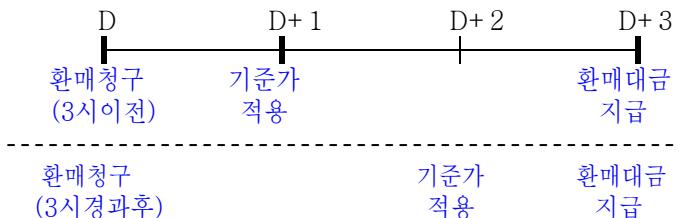
###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나)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3) 환매수수료

빈번한 환매는 투자회사재산의 매매수수료 증가 및 운용에 대한 교란 등을 야기하여 투자성과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이러한 문제발생 소지 및 투기적인 단기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주권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회사 재산으로 편입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이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이익을 현저히 하락시키며, 주권의 잣은 매매는 높은 환매수수료를 유발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B	종류 I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정수)	없 음	없 음	90일 미만 시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회사 주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5) 주권의 일부환매

- 주주는 보유한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주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7) 주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주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주주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하며 집합주주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

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고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자체 없이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기간중에는 이 투자회사 주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8) 주권의 부분환매(상기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주권을 일부 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7항에 따라 일부 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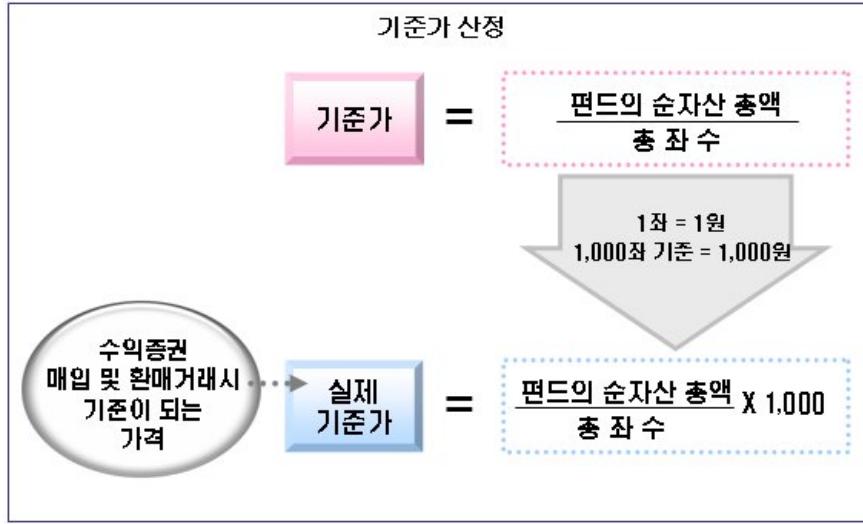
※ 환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관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주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주주가 없는 종류주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판매사 영업점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yurieasset.co.kr">www.yurieasset.co.kr</a>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p>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li> <li>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li> </ol>
공정가액	<p>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li> <li>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li> <li>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평가회사</li> <li>「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li> <li>신용평가업자</li> <li>「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li> <li>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li> <li>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li> <li>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li> </ul> </li> <li>환율</li> <li>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li> </ol>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예상배당금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증권사추정 예상배당금과 회사가 추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시가형성전 상장신주식	<p>①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 전까지의 평가는 구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전환 또는 행사기준일을 영업년도말로 보는 경우에는 구주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액을 차감하여 평가</p> <p>②공모신주식은 최초로 시가가 형성되는 날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p> <p>③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미상장주식은 해지금 지급일에 지급일 전일의 평가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p> <p>④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신주인수권은 해지금 지급일에 전일의 평가액에서 신주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p>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상장채무증권	당해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 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매각제한 투자재산 등	<p>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p> <p>1.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곤란하여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p> <p>2.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p> <p>3.기준가 산출시점 현재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으로서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화표시재산</p> <p>4.기타 제1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재산</p>

##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li> <li>· 위원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li> <li>· 간사 : 평가담당부서장(주무 부서장)</li> </ul>
회의소집	<p>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li> <li>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3.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li> </ol>
기능	<p>다음의 사항을 논의 및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li> <li>2.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li> <li>3.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li> <li>4.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5.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li> <li>6.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li> <li>7.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li> <li>8.기타 관련법규 및 정관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정관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li> </ol>
의결방법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름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지급시기
	Class A	Class B	Class I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납입금액의 1%	없음	납입시
후취판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금액의 0.5%	없음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없음	없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3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Class A	Class B	Class I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5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 하단의 기간별 보수율 참조	-	연 0.120%		
신탁업자 보수	연 0.030%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25%				
기타 비용	연 0.023%	연 0.023%	연 0.021%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 하단의 기간별 보수율 참조	연 0.578%	연 0.696%	-	
증권 거래비용	연 0.097%	연 0.096%	연 0.096%	사유발생시	

※ Class A 기간별 보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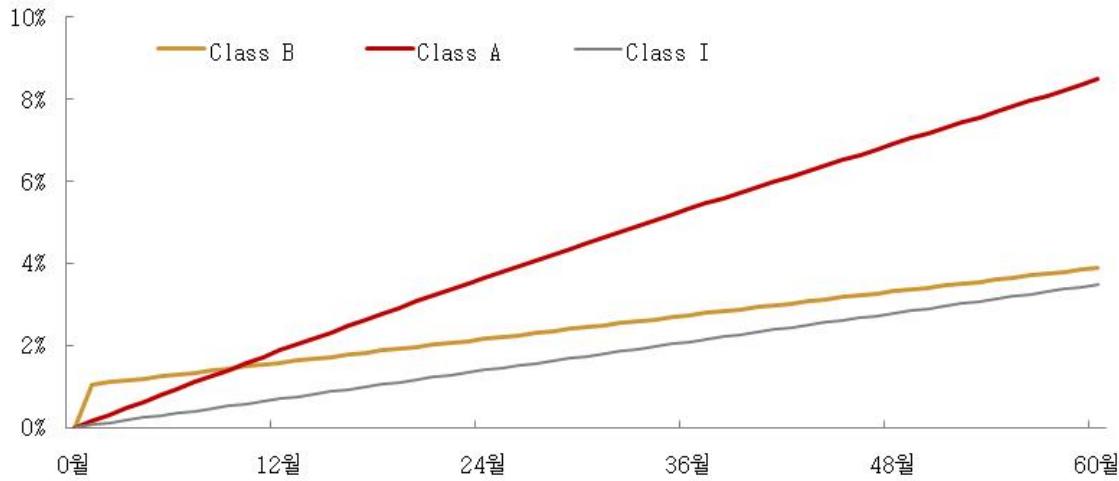
적용기간	판매회사보수	총보수 · 비용
2010년 05월 03일 ~ 2011년 05월 02일	연 1.300%	연 1.878%
2011년 05월 03일 ~ 2012년 05월 02일	연 1.200%	연 1.778%
2012년 05월 03일 ~ 2013년 05월 02일	연 1.100%	연 1.678%
2013년 05월 03일 ~ 신탁계약의 만료일	연 1.000%	연 1.578%

Class A의 판매보수 및 총보수 · 비용은 각 기간에 따라 위의 보수율을 적용 받습니다.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 거래비용은 총보수 · 비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5)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6) 이 투자회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바, 상기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회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클래스별 유리한 투자기간

클래스별로 투자기간 증가에 따라 누적되는 원금대비 보수 및 비용 비율의 추이를 월단위로 표시하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 및 보수 수준의 실제 결과치는 운용과정에서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축 : 누적 보수 및 비용 / 투자원금
- 횡축 : 투자기간 (2010년 5월 3일 가입기준)

- \* 투자기간에 관계 없이 모든 클래스의 기준가격이 일정하다라는 가정 하에 거래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추정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Class A의 후취판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에만 부과되므로 위 보수율 및 비용 추이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 판매보수 인하 시행일인 2010년 5월 3일 가입기준에 따른 보수율추이이므로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Class A	190	557	915	1,921
Class B	159	285	423	822
Class I	71	223	387	86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증권매매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은 비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3) Class A의 보수는 판매보수 인하 시행일인 2010년 5월 3일 가입기준에 따른 누적보수이므로 가

입시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회사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주주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주주는 주주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회사의 새로운 주권을 매수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주주별 매수 주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자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회사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회사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주주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주주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주주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회사의 주식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회사로부터 받게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3) 과세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전 기준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 입장에서의 투자손익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과세대상 이익 계산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과표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출하여 과세대상 이익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기준가격의 하락에 불구하고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주주는 투자손실의 발생에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소 등을 통해 기준가격과 함께 공시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주주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주주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는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15. 발기인 ·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명	설립월일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비 고
유리자산운용(주)	1998년 10월 28일	-	-	-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직명	성명	생년월일	소유주식수	비고
이사	김인준	1949년03월21일	-	월 300,000원
이사	김동석	1955년02월26일	-	월 300,000원
이사	심경섭	1945년05년14일	-	월 300,000원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설립 후 최초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 감독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독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9 기 2011.02.08	안진회계법인	적정
제 8 기 2010.02.08	안진회계법인	적정
제 7 기 2009.02.08	안진회계법인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목	대차대조표		
	제 9 기 2010.02.09~ 2011.02.08	제 8 기 2009.02.09~ 2010.02.08	제 7 기 2008.02.09~ 2009.02.08
운용자산	49,773,103,705	67,320,986,333	70,341,381,617
유가증권	43,275,888,450	51,124,760,965	62,663,810,600
현금 및 예치금	797,215,255	896,225,368	2,677,571,017
기타 운용자산	5,700,000,000	15,300,000,000	5,000,000,000
기타자산	466,310,990	697,907,807	16,024,631,109
자산총계	50,239,414,695	68,018,894,140	86,366,012,726
기타부채	12,244,970,556	0	15,018,255,112
부채총계	12,244,970,556	0	15,018,255,112
원본	37,994,444,139	69,208,317,677	95,718,463,959
이익조정금	0	-2,351,841,626	-24,370,706,345
자본총계	37,994,444,139	66,856,476,051	71,347,757,614
손익계산서			
항목	제 9 기 2010.02.09~ 2011.02.08	제 8 기 2009.02.09~ 2010.02.08	제 7 기 2008.02.09~ 2009.02.08
운용수익	20,261,452,910	22,550,993,472	-22,410,678,884
이자수익	219,577,900	299,725,931	562,116,315
배당수익	640,449,604	715,129,811	1,060,853,485
매매/평가차익(손)	19,275,982,404	21,421,552,673	-24,052,074,283
기타수익	125,443,002	114,585,057	18,425,599
운용비용	419,059,175	516,667,571	516,379,463
관련회사보수	398,805,940	487,910,353	481,013,142
매매수수료	5,474,675	6,371,645	3,350,816
기타비용	14,778,560	22,385,573	32,015,505
당기순이익	19,842,393,735	22,034,325,901	-22,927,058,347
매매회전율	120.7	1725.71	210.31

주1) 요약 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목	제 9 기 2010.02.09~ 2011.02.08	제 8 기 2009.02.09~ 2010.02.08	제 7 기 2008.02.09~ 2009.02.08
운용자산	49,773,103,705	67,320,986,333	70,341,381,617
현금및예치금	797,215,255	896,225,368	2,677,571,017
현금및현금성자산	646,958,940	95,138,868	2,387,293,087
증거금	150,256,315	801,086,500	290,277,930
대출채권	5,700,000,000	15,300,000,000	5,000,000,000
콜론	5,700,000,000	15,300,000,000	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5,000,000,000
유가증권	43,275,888,450	51,124,760,965	62,663,810,600
지분증권	39,402,176,950	51,124,760,965	62,663,810,600
수익증권	3,873,711,500	0	0
기타자산	466,310,990	697,907,807	16,024,631,109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14,691,892,120
정산미수금	0	0	373,113,260
미수이자	437,096	860,481	1,115,332
미수배당금	458,898,800	683,048,200	906,711,975
기타미수입금	6,975,094	13,999,126	51,798,422
자 산 총 계	50,239,414,695	68,018,894,140	86,366,012,726
기타부채	12,244,970,556	1,162,418,089	15,018,255,112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2,067,510	14,828,831,160
정산미지급금	48,000,000	97,828,878	710,560
해지미지급금	252,988,398	940,722,493	79,664,864
미지급운용수수료	67,891,527	91,512,054	82,255,158
미지급판매수수료	9,740,749	16,926,901	14,662,906
미지급수탁수수료	4,073,491	5,490,722	4,935,309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3,394,576	4,575,602	4,112,757
수수료미지급금	2,964,407	3,237,329	3,030,823
기타미지급금	11,855,917,408	56,600	51,575
부 채 총 계	12,244,970,556	1,162,418,089	15,018,255,112

원    본	37,994,444,139	69,208,317,677	95,718,463,959
이익잉여금	0	-2,351,841,626	-24,370,706,345
자    본    총    계	37,994,444,139	66,856,476,051	71,347,757,614
부채    및    자    본    총    계	50,239,414,695	68,018,894,140	86,366,012,726
총좌수	37,994,444,139	69,208,317,677	95,718,463,959
기준가격	1,000	966.02	745.39

####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목	제 9 기 2010.02.09 ~ 2011.02.08	제 8 기 2009.02.09 ~ 2010.02.08	제 7 기 2008.02.09 ~ 2009.02.08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20,257,318,339	22,550,993,472	-22,410,678,884
투자수익	984,412,135	1,128,430,182	1,640,969,543
이자수익	219,577,900	299,725,931	562,116,315
배당금수익	640,449,604	715,129,811	1,060,853,485
수수료수익	124,384,631	113,574,440	17,999,743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9,650,838,435	66,292,242,212	32,005,995,398
지분증권매매차익	8,308,042,639	37,498,934,674	2,856,793,223
파생상품매매차익	12,673,595,780	28,793,307,538	29,149,202,175
지분증권평가차익	8,669,200,016	0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0,378,990,602	44,870,689,539	56,058,069,681
지분증권매매차손	1,909,047,190	20,384,522,551	22,726,950,813
파생상품매매차손	8,469,943,412	21,718,184,520	31,544,019,719
지분증권평가차손	0	2,767,982,468	1,787,099,149
기타운용수익	1,058,371	1,010,617	425,856
운    용    비    용	419,059,175	516,667,571	516,379,463
운용수수료	314,660,051	378,198,067	372,012,050
판매수수료	49,533,290	68,110,507	68,079,777
수탁수수료	18,879,599	22,691,880	22,320,718
사무수탁수수료	15,733,000	18,909,899	18,600,597
매매수수료	5,474,675	6,371,645	3,350,816
기타운용비용	14,778,560	22,385,573	32,015,505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9,838,259,164	22,034,325,901	-22,927,058,34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349.97	260.77	-266.14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가. 종류 A 투자증권

(단위 : 백만좌/백만원)

기간	기간초잔고		재투자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07/02/09~2008/02/08	532	556	0	0	6,397	7,574	3,146	4,083	3,783	4,572
2008/02/09~2009/02/08	3,783	4,572	784	784	2,360	2,037	1,519	1,454	5,408	3,977
2009/02/09~2010/02/08	5,408	3,977	0	0	1,462	1,364	2,272	2,044	4,598	4,327
2010/02/09~2011/02/08	4,598	4,327	0	0	875	1,044	3,135	3,487	2,338	2,952

### 나. 종류 B 투자증권

(단위 : 백만좌/백만원)

기간	기간초잔고		재투자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07/02/09~2008/02/08	27,526	30,556	0	0	58,498	71,675	38,991	46,946	47,032	57,630
2008/02/09~2009/02/08	47,032	57,630	10,540	10,540	49,633	46,017	26,894	24,463	80,310	59,918
2009/02/09~2010/02/08	80,310	59,918	0	0	22,899	21,270	38,599	36,686	64,610	62,529
2010/02/09~2011/02/08	64,610	62,529	0	0	26,978	29,755	55,932	64,161	35,656	46,898

##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 가. 출자지분의 총수

#### (1) 종류 A 투자증권

(2011.02.08 현재)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출자지분의 총수
1 조주(1,000,000,000,000 주)	2,338,185,234	997,661,814,766

#### (2) 종류 B 투자증권

(2011.02.08 현재)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출자지분의 총수
1 조주(1,000,000,000,000 주)	35,656,258,905	964,343,741,095

#### (3) 종류 I 투자증권

(2010.02.08 현재)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출자지분의 총수
1 조주(1,000,000,000,000 주)	0	0

##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 (1) 종류 A 투자증권

(2011.02.08 현재)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총액	비 고
투자회사 주식	무액면, 기명식	2,338,185,234	2,338,185,234	

### (2) 종류 B 투자증권

(2011.02.08 현재)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총액	비 고
투자회사 주식	무액면, 기명식	35,656,258,905	35,656,258,905	

### (3) 종류 I 투자증권

(2011.02.08 현재)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총액	비 고
투자회사 주식	무액면, 기명식	0	0	

##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회사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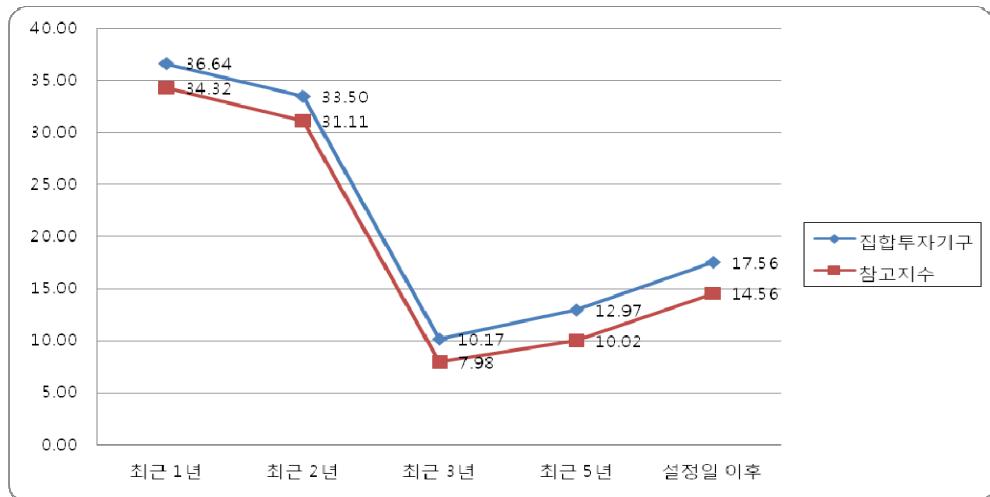
###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 11.02.08기준)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0/02/09~ 2011/02/08	2009/02/09~ 2011/02/08	2008/02/09~ 2011/02/08	2006/02/09~ 2011/02/08	2001/03/06~ 2010/02/08
투자회사전체	36.64	33.50	10.17	12.97	17.56
참고지수	34.32	31.11	7.98	10.02	14.56
Class A	34.18	31.04	8.08		11.56
참고지수	34.32	31.11	7.98		10.37
Class B	35.91	32.78	9.56	12.33	17.21
참고지수	34.32	31.11	7.98	10.02	1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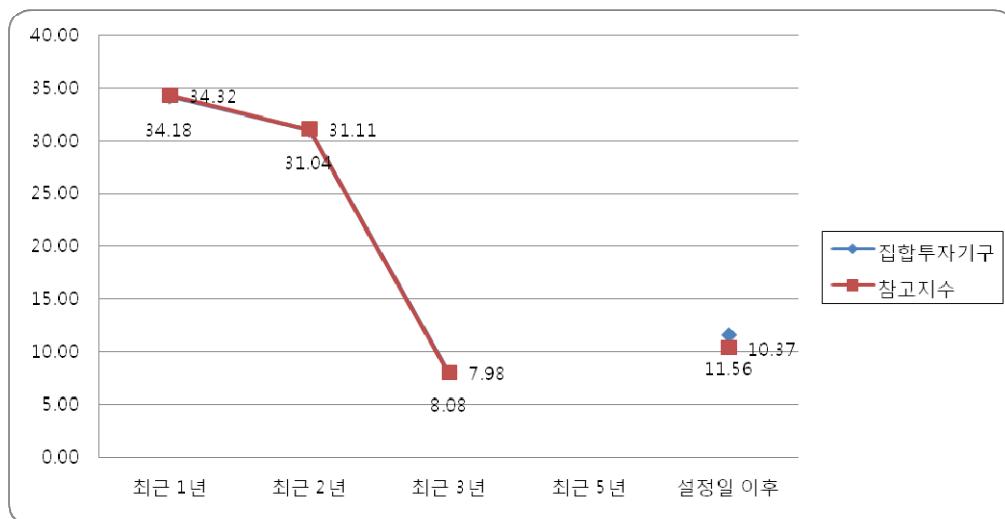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PI200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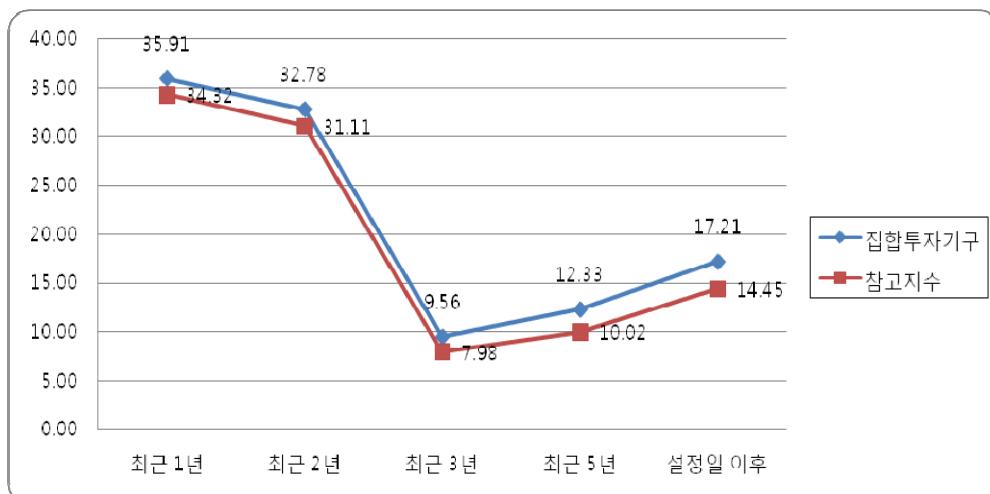
#### [투자회사전체]



#### [Class A]



#### [Class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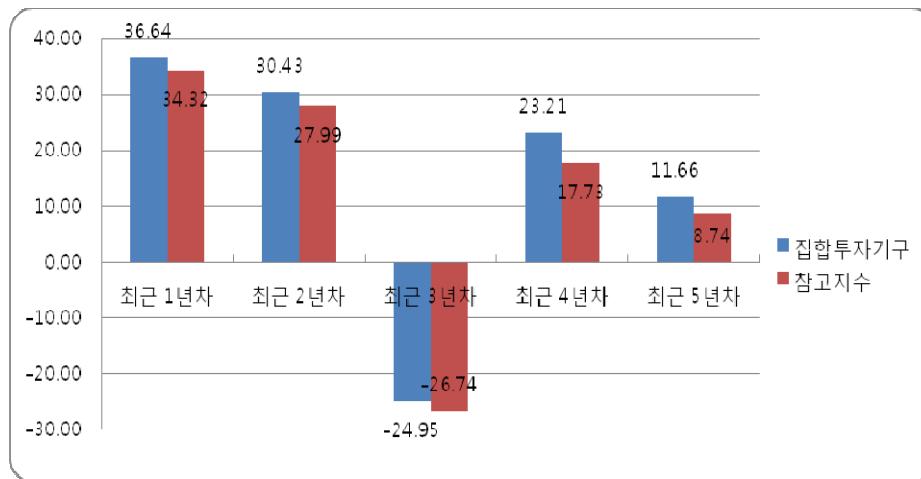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11.02.08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0/02/09~ 2011/02/08	2009/02/09~ 2010/02/08	2008/02/09~ 2009/02/08	2007/02/09~ 2008/02/08	2006/02/09~ 2007/02/08
투자회사전체	36.64	30.43	-24.95	23.21	11.66
참고지수	34.32	27.99	-26.74	17.73	8.74
Class A	34.18	27.98	-26.46	20.85	4.40
참고지수	34.32	27.99	-26.74	17.73	2.67
Class B	35.91	29.72	-25.39	22.53	11.01
참고지수	34.32	27.99	-26.74	17.73	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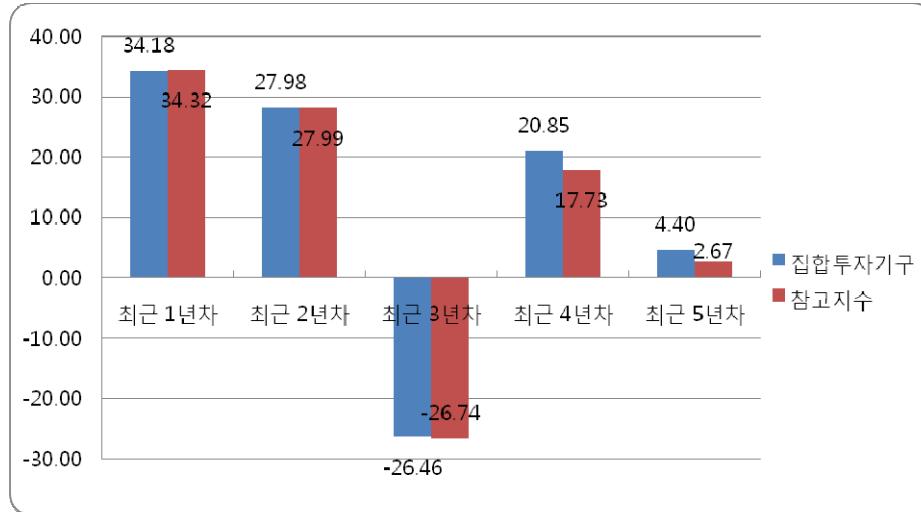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PI200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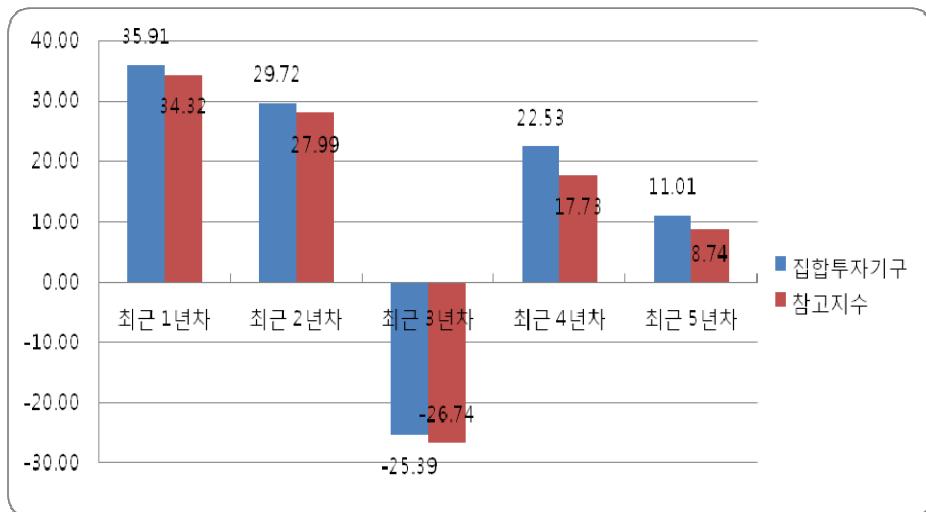
[투자회사전체]



[Class A]



[Class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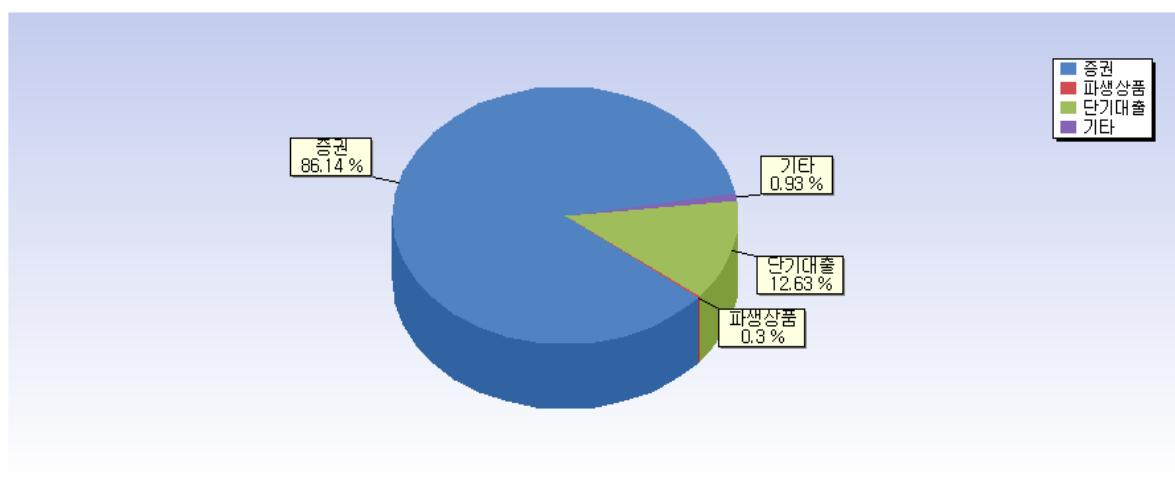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1.02.08 기준, 단위: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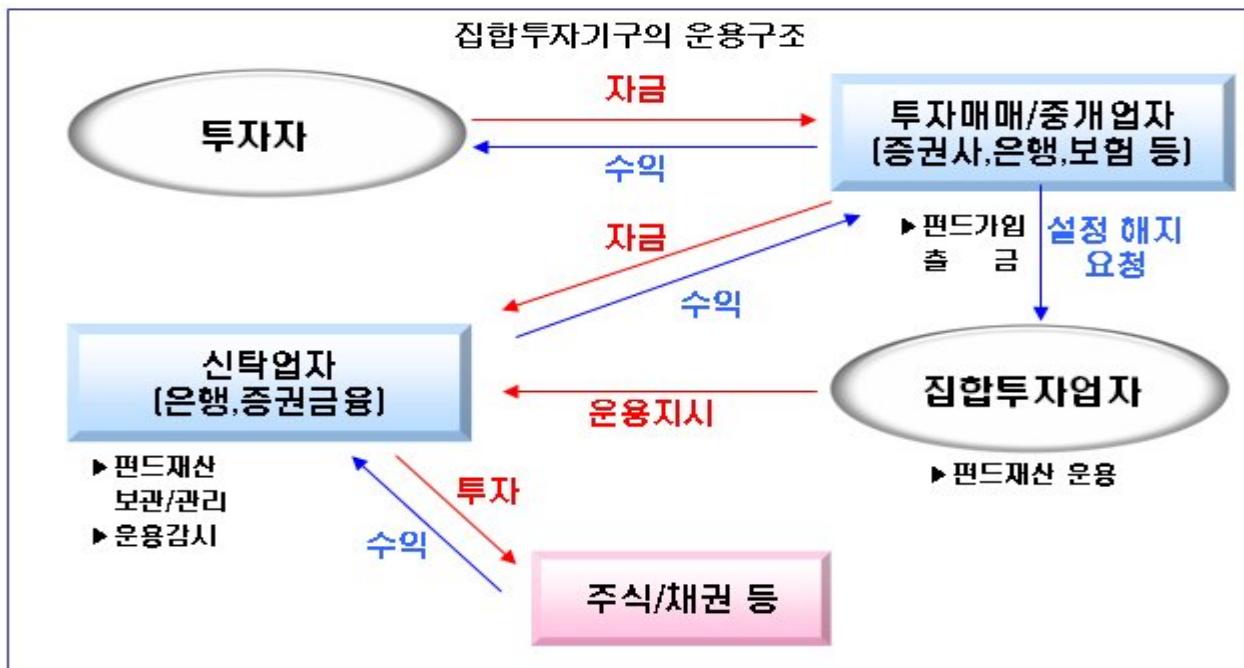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여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 산	실물 자산	기타		
대한민국 (비중)	39,402	0	0	3,874	150	0	0	0	0	6,347	466	50,239
	78.43	0.00	0.00	7.71	0.30	0.00	0.00	0.00	0.00	12.63	0.93	100.00
자산합계 (비중)	39,402	0	0	3,874	150	0	0	0	0	6,347	466	50,239
	78.43	0.00	0.00	7.71	0.30	0.00	0.00	0.00	0.00	12.63	0.93	100.00

※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자산 구성별 현황]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연락처 : 02-2168-7900, <a href="http://www.yurieasset.co.kr">www.yurieasset.co.kr</a> )
회사연혁	1998.10 설립일 2001.10 국민연금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4.11 지방행정공제회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4.12 삼성생명, 정보통신부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5.01 우리은행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6.02 매경-제로인 선정 '2005 펀드 대상' 특별상 2006.09 국민연금 액티브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7.04 연기금풀 인덱스형, 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7.11 보험사 변액연금 인덱스형 운용사 선정 2008.07 국민연금 중소형주식형 운용사 선정 2009.01 유리TREX200 ETF 출시
자본금	153억
주요주주현황	부국증권(주) 99.05% / 우리사주조합 0.92% / 기타 0.03%

#### 나. 주요 업무

### (1) 주요업무

- 투자회사의 설정 및 해지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2) 선관의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구 분	제 13 기	제 12 기	증 감 액
	(2011년 3월 31일)	(2010년 3월 31일)	
I . 현금 및 예치금	20,728,432	18,360,872	2,367,560
II . 유가증권	1,009,805	734,455	275,350
III . 대출채권	163,832	226,283	-62,452
IV . 유형자산	470,306	308,171	162,135
V . 기타자산	4,358,092	7,445,330	-3,087,237
자 산 총 계	26,730,467	27,075,111	-344,645
I . 예수부채	19,810	122,954	-103,145
II . 기타부채	405,899	1,079,109	-673,210
부 채 총 계	425,709	1,202,063	-776,355
I . 자본금	15,300,000	15,300,000	0
II . 자본잉여금	197,639	197,639	0
III . 이익잉여금	10,807,119	10,375,409	431,710
자 본 총 계	26,304,758	25,873,048	431,710

## 요 약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천원)

구 분	제 13 기	제 12 기	증 감 액
	(2010.4.1 ~ 2011.3.31)	(2009.4.1 ~ 2010.3.31)	
I . 영업수익	7,931,958	8,754,399	-822,441
1. 운용보수	4,700,430	5,176,823	-476,393
2. 수수료수익	2,529,187	2,736,272	-207,086
3. 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36,881	13,001	23,880
4. 이자수익	652,217	811,569	-159,352
5. 배당금수익	13,244	16,733	-3,489
II . 영업비용	5,945,341	6,595,992	-650,651
1. 수수료비용	322,392	376,903	-54,512
2. 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	0	3,491	-3,491
3. 판매비와관리비	5,622,949	6,215,598	-592,649
III . 영업이익	1,986,618	2,158,407	-171,790
IV . 영업외수익	1,423	24,821	-23,398
V . 영업외비용	1,352,625	109,822	1,242,803
VI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35,416	2,073,407	-1,437,991
VII . 법인세비용	203,706	623,415	-419,710
VIII . 당기순이익	431,710	1,449,991	-1,018,281

\* 제12기 : 09.04.01~10.03.31 / 제13기 : 10.04.01~11.03.31

\* 상기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로서 감사 의견은 적정임

### 라. 운용자산 규모

(2011. 02. 08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계
수탁고	5,704	1,600	5,878	1,646	4,402	0	173	575	0	19,978

###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래동 1가 25 (02-2004-0000)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www.citibank.co.kr">www.citibank.co.kr</a>
회사연혁 등	1981.09.17 한미금융주식회사(주) 설립 1989.11.11 증권거래소 주식상장 2006.10.26 납입자본금 13,099억원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회사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외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번지 한외빌딩 9층 (☎02-6714-4613)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없음)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연락처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연락처 : 02)3770-04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연락처 : 02)739-359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koreabp.com">www.koreabp.com</a> 2000.05 설립 2005.08 한국펀드평가와 단독 전략적 업무 제휴 2006.10 한국정보산업연합 회/CRM협회대상 수상 2007.10 국민연금 부동산 지분증권 평가기관으로 선 정 2008.03 KIBO A+ Members 기업선정(기	<a href="http://www.bond.co.kr">www.bond.co.kr</a> 2000.06 설립 2003.11 업계최초로 KIS- Term Structure(개별기업 별 이자율 기간구조) 발표 2005.03 업계 최초로 채권 지수 보조지표로 평균 Spread 정보를 추가 발표 2006.01 업계최초로 CP- Term Structure(개별기업별 CP 이자율 기간구조) 발표	<a href="http://www.nicepricing.co.kr">www.nicepricing.co.kr</a> 2000.06 설립 2002.01 국민연금기금 성 과평가 실시 2005.11 간접투자기구평가 회사 등록(금융감독원) 2007.09 한국증권업협회 회원사 보유 비상장주식 외 부평가 전문기관으로 단독 선정 2008.05 GIPS관련 성과평

	(KIS-Net) 2006.07 KIS-Net Ver.2.0 발표 2008.01 ING자산운용의 채권부문 성과요인 분석 모 듈 구축	가시스템 v.1.0)	출시(N-GIPS
--	--	----------------	-----------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입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등

#### (1) 주주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회사에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둡니다.
- ② 주주총회는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 집합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주권 주주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총회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주권 총주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권 총주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주주총회는 발행된 주권 총주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주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권의 총주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주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주주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권의 주수가 발행된 주권 총주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주주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권의 총주수가 발행된 주권의 총주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권의 총주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주주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A.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B.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 C.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 D.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회사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회사존속기간의 종료, 주주총회의 투자회사 해산 결의, 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 마. 재판관할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 환거래법 제3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정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 정관에서 정한 준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투자회사의 꾀흡수합병
- 투자회사의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금융위원회의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집합투자기구 등록의 취소	<p>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li> <li>ii.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업무정지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li> <li>iii. 집합투자기구가 해산한 경우</li> <li>iv. 최저순자산액(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li> <li>v.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li>vi.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vii. 그 외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ul>
최저순자산액 미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및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은 10억원으로 합니다.</li> <li>- 투자회사는 최저순자산액이 미달하는 경우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li> <li>-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3개월이 경과할때까지 미달 사실이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li> </ul>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합니다.

- 투자회사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1)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 2)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 우편으로 발송

-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 방법은 자산운용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 ④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회사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http://www.yurie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정관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회사에 한함)
- ⑨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회사에 한함)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4) 위험지표의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http://www.yurieasset.co.kr)) 등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	산정·작성 방법	공시시기
계약금액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포지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 날까지 공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이를 서술식으로 요약하여 기재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 날까지 공시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시나리오법에 따라 선정	매일 공시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 계약금액	최대 손실예상금액(VaR)은 보유 포지션의 시장가치 * 신뢰구간에 따른 표준 편차의 배수*포지션의 변동성(표준편차)* $\sqrt{\text{보유기간}}$	매일 공시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주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2. 제1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가) 선정 시 고려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예 : 상장주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 단, 유동성이 없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는 위의 상기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가증권의 매수 혹은 매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증개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증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증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마케팅비용 /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증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증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증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증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 중개사의 평가

- 각 운용부서장은 원칙적으로 아래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합니다.
  1. 매매체결능력
  2. 중개수수료
  3. 정보제공의 정도
  4. 조사분석자료의 질
  5. 결제이행능력
- 각 운용부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합리적인 중개사선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약정배분기준

-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합니다.
  2. 약정 집행은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5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5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 합니다.
  2. 약정집행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3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운용부서는 매분기마다 제4조에 의하여 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중개회사별 매매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분기말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제3항의 계획된 중개사순위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 고> 펀드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순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자산운용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